

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대학원 내규

2023년 11월 기준

제1장 입학전형

제1조 입학 전형 기준 및 배점(신입생선발)

① 석사과정

서 류: 학업성취도(20%), 연구/학업계획(20%)

구술, 면접: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(30%), 전공소양(30%)

* 전공지식과 연구잠재력은 전공 소양과 대수학, 해석학, 위상수학 및 기하학, 수치해석학, 정수론 및 암호학 중 지원자가 선택한 한 분야의 기본 지식을 평가한다. (2008. 3. 13)

② 통합과정

서 류: 학업성취도(20%), 연구/학업계획(10%), 추천 및 종합평가(10%)

구술, 면접: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(40%), 전공소양(20%)

* 전공지식과 연구잠재력은 전공 소양과 대수학, 해석학, 위상수학 및 기하학, 수치해석학, 정수론 및 암호학 중 지원자가 선택한 한 분야의 기본 지식을 평가한다. (2008. 3. 13)

③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

서 류: 학업성취도(20%), 연구/학업계획(10%), 추천 및 종합평가(10%)

구술, 면접: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(40%), 전공소양(20%)

* 전공 지식과 연구잠재력 평가에서는 해석학, 대수학, 위상수학 및 기하학, 수치해석학, 암호학, 응용해석학의 6분야 중 지원자의 박사 논문 희망 분야를 포함하여 2 분야를 선택하여 구술시험

제2조 전형위원 구성

전공주임교수가 구성된 후 과 회의에서 승인

제3조 구술, 면접의 진행 방식

구술면접위원이 수험생 한 명씩을 차례로 구술시험 및 면접을 시행

제2장 교과목 이수

제4조 교과목지도

① 대학원 석사 과정의 전공은 수학이며, 세부전공으로 대수학·해석학·위상수학 및 기하학·수치해석학·암호학·응용해석학이 있다.

② 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은 대수학·해석학·위상수학 및 기하학·수치해석학·암호학·응용해석학이 있다.

③ 보충학점 부과자의 보충과목 선정은 입학할 시점에 전공 및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여 학과 주임교수가 교과목을 지도한다.

④ 교과목 이수에 있어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. (2014. 6. 2.)

제5조 신입생 보충학점

①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: 신입생이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학과주임교수는 보충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.

가. 수학과교과목을 36학점 미만 이수한 경우 : 6학점 이상

나. 학부를 졸업한지 2년을 초과한 경우 : 3학점 이상

다. 기타 대학원 과정 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: 3학점 이상

② 박사과정 신입생이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학과주임교수는 보충학점을

부과할 수 있다.

가. 석사학위를 취득한지 2년을 초과한 경우 : 3학점 이상

나. 기타 대학원 과정 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: 3학점 이상

- ③ 지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과주임교수는 1 내지 2항에서 부과하는 보충학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3장 논문제출 및 자격시험

제6조 영어 시험

- ① 석사과정 합격선:TOEFL(PBT:500점 이상, CBT:173점 이상, IBT:61점 이상), TOEIC(585점 이상), TEPS(468점 이상)
- ② 박사과정 합격선:TOEFL(PBT:530점 이상, CBT:197점 이상, IBT:71점 이상), TOEIC(675점 이상), TEPS(569점 이상)
- ③ 외국어 시험에 관련하여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(2014. 6. 2.)

제7조 종합시험과목

-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대수학(대수학 I, II), 해석학(실해석학 I, 복소해석학 I), 위상수학(미분위상수학, 대수위상수학), 수치해석학(대수적수치방법, 수치미분방정식) 4개 분야에서 제시된 8과목 중 서로 다른 3개 분야에서 각 1과목씩 본인이 선택한 3개 과목과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분야의 1개 과목을 통과하여야 한다. 단, 교과목 개설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인 선택 3개 과목 중 1개 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아 제시된 8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응시할 수 있다. (2023.11.22)
-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종합시험과목을 제외한 전공 2개, 전공 관련 2개 과목을 통과하여야 하고, 응시신청은 시험 1학기 전에 하여야 한다. (2009. 9. 3.)
- ③ 종합시험의 출제 위원은 담당교과목 전임 교원으로 하고, 각 과목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.

제8조 시험응시 자격 및 시기

- ①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3학기 수료 후, 통합과정은 5학기 수료 후 응시할 수 있고, 석사과정 종합시험 응시에는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. (2008. 7. 7)
- ② 종합시험은 2월과 8월 시험공고 후 응시신청을 받아, 매학기 초 실시하되 장소와 시간은 개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, 다만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3학기 이상 학생에게는 학기 중(7월, 1월) 재시험을 허용할 수 있다. (2014. 6. 16)

제9조 통합과정 자격시험

- ① 통합과정 자격시험의 시기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- ② 자격시험 시험 과목과 시행은 석사과정 종합시험과 통합하여 운영하되, 각 과목 합격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로 한다. (2014. 6. 16)

제10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

- ①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를 위하여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. (2013. 11. 8)
- 서 류: 지도교수 의견서, 논문 계획서, 진로 계획서
- 필기 시험: 일부 종합고사 시험(1과목)

제4장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

제11조 논문지도교수

-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생은 입학 시점에 희망전공을 결정하고, 1학기 수료 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.
- ② 박사과정 입학생은 입학 시점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.
- ③ 지도교수 자격기준은 대학원 규정에 준한다.
- ④ 지도학생 수는 가급적 전 분야가 고르게 되도록 하되, 한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최대 지도학생의 수는 2인(학기당), 3인(학년도) 기준으로 하고 예외는 학과회의의 결정에 따른다. (2008. 2. 29)

제12조 (석사학위 논문심사)

- ① 논문심사 위원은 지도교수, 관련전공교수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구술심사를 위한 논문 수정본이 심사위원회에 심사에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, 구술심사를 취소한다.
- ③ 구술심사 1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은 10일 이내에 실시하고, 재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다음 학기 이후에 논문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.
- ④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 (2014. 6. 2.)

제13조 (박사학위 논문심사)

- ① 논문 계획서 발표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 희망자에 한하여 논문제출 직전학기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- ② 논문심사 위원은 지도교수, 관련전공교수 1인 이상, 타교 교수 2인 이내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구술심사를 위한 논문 수정본이 심사위원회에 심사에정일 최소 1달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, 구술심사를 취소한다.
- ④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 (2014. 6. 2.)

제13조의 2 (재학 중 논문 발표)

-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. (2014. 6. 2.)
- ② 제 1 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(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포함)를 제 13조의 박사학위논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. (2014. 6. 2.)